

검 토 보 고

1997. 7. 16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7년 7월 3일 제출
- 회 부 : 1997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-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본부에서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·예산협의회를 통하여 조정된 사항을 자체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계획으로 대체하여 운영함으로
- 본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,
 -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등은 중앙단위에서 조정된 사항을 방송통신고등학교 자체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